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필모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708

발의연월일: 2020. 11. 25.

발 의 자:정필모·이용빈·유정주

한준호 • 이학영 • 신영대

변재일 • 허 영 • 박광온

오영환 · 김성주 의원

(1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자력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 위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원회의 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또는 위촉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음이 판명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해당 위원이 퇴직하였는지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위원회의 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당연히 퇴직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법률 제 호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또는 위촉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위원의 직에서 당연히 퇴직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위원회의 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6조(위원의 결격사유) (생 략 | 제6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현행 |
| |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
| <u> <신 설></u> | ② 위원회의 위원이 「국가공 |
| | 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
| |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
| | 또는 위촉 당시 그에 해당하는 |
| | 사람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
| | 위원의 직에서 당연히 퇴직한 |
| | <u>다.</u> |
| <u><신 설></u> |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위원 |
| | 회의 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
| |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 |
| | <u>다.</u> |